

의안번호	2202861
의 퇴 인	이건태 의원
회 답 일	2024. 08. 23.
추 계 번호	24A2804

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

국회예산정책처
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4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	·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제2항 ¹⁾ 에서 친일반민족행위를 찬양·고무·선전 또는 이에 동조한 사람, 법인, 단체, 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할 경우에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에 심사를 신청하여 그 결과에 따름(제3항)	의무규정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4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제3항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- 개정안은 친일반민족행위를 찬양·고무·선전 또는 이에 동조한 사람, 법인, 단체, 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할 경우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에 심사를 신청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이에 따른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

1) 안 제4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정하는 공공기관은 친일반민족행위를 찬양·고무·선전 또는 이에 동조한 사람, 법인, 단체, 기관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공무원, 임원, 직원, 자문위원(명칭을 불문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업무를 자문, 지원, 조력, 감시 등 행위를 수행하는 외부인)을 임명 또는 위촉하거나, 예산을 지원하면 아니된다.

- 안 제4조제2항에서는 친일반민족행위를 찬양·고무·선전 또는 이에 동조한 사람, 법인, 단체, 기관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공무원, 임원, 직원, 자문위원에 임명하거나 위촉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어 안 제4조제3항에서 친일반민족행위를 찬양·고무·선전 또는 이에 동조한 사람, 법인, 단체, 기관인지 여부의 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

□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는 2005년 출범 및 2009년 활동을 종료¹⁾한 위원회로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현재 위원회 개최 및 운영을 위한 정부 예산이 투입되지 않고 있음

[표 1] 과거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활동내역

구분	내용
위원회 활동기간	2005. 5. 31 ~ 2009. 11. 30
위원회 활동경과	- 「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」 제정·공포(2004.3.22.) -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출범(2005.05.31.) - 제1기 친일반민족행위자 106명 공개(2006.12.6.) - 제2기 친일반민족행위자 195명 공개(2007.12.6.) - 제3기 친일반민족행위자 705명 공개(2009.11.25.) -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보고서 발간(2009.11.27.) -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공식 활동 종료(2009.11.30.)
위원회 구성	- 위원장 1인(장관급) - 상임위원 1인(차관급) - 11명의 위원
사무기구	- 1단 1관 1실 7팀, - 사무처장(1급) : 대통령 임명 - 직원 53명
위원회 업무	- 친일반민족행위 조사대상자의 선정 - 조사대상자가 행한 친일반민족행위의 조사 - 친일반민족행위와 관련된 국내외 자료의 수집 및 분석 - 위원회 활동에 관한 조사보고서의 작성·발간 및 친일반민족행위에 관한 사료의 편찬 및 사료관 건립에 관한 사항 - 친일반민족행위 조사대상자의 친일반민족행위 결정에 관한 사항 - 그 밖에 진상규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

자료: 국가기록포털(www.archives.go.kr) 및 「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」을 참고하여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1) 현재 행정안전부의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 내 송무이행과가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활동 종료 후 행정안전부로 이관된 쟁송업무를 계속 수행중

-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의 재구성 및 심사가 필요한 안건의 개수와 이에 따른 위원회 개최 일수 및 민간 위원 수, 사무기구 운영을 위한 인건비·사업비 등에 관한 정보가 필요함
- 다만, 개정안에 따라 향후 구성될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위원 현황, 위원회 개최 일수, 사무국 인건비·운영비, 사무실 임차 여부 등을 예측하기가 곤란하고, 이를 추정하기 위한 기초자료가 부족하므로 현시점에서 합리적 가정에 따른 추계가 어려움
- 이에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, 개정안은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

Ⅲ. 부대의견

□ 없음

Ⅳ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행정비용추계과	지수현	김안나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지수현	02-6788-3750	zisu37@nabo.go.kr